

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(제25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 다만,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(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,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)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) 법 제28조제1항 각 호(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)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2호	시정명령	훈련정지 3개월	지정취소

<p>2)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</p>		시정명령	훈련정지 1개월	지정취소
<p>다.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</p> <p>1)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</p> <p>2)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가)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</p> <p>나)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</p> <p>3)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법 제31조 제1항제3호</p>	<p>지정취소</p>	<p>지정취소</p>	
<p>라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1조 제1항제4호</p>	지정취소		
<p>마.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</p> <p>1)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제24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</p>	<p>법 제31조 제1항제5호</p>	시정명령	훈련정지 1개월	지정취소

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한 경우 2)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		시정명령	훈련정지 1개월	지정취소
바.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)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) 그 밖의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6호	훈련정지 1개월 시정명령	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1개월	지정취소 지정취소
사.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 1)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해지를 받은 경우 2)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 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 우	법 제31조 제1항제8호		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1개월	지정취소 지정취소

※ 비고

1. 제2호다목2)가)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,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각각 법 제16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·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의 전 과정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것을 말한다.
2. 제2호사목1)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6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것을 말한다.
3. 제2호사목2)의 경우 1차 위반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를 받은 것을 말한다.